##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

## 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4. 2016고합12, 2016고합46(병합), 2016고합102(병합)]



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이성식, 김정훈, 정효민(각 기소), 이성식, 임길섭, 임삼빈(각 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여는 외 1인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,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